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20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 : 임호선 · 오영환 · 전용기

김남국 • 윤영덕 • 김승원

오영훈 · 이해식 · 김용판

서영석 · 김민철 · 윤준병

황운하 의원(13인)

제안이유

소방공무원은 직무의 특성상 늘 재난현장에서 위험하고 참혹·충격적인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부상과 트라우마 등 정신적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와 추적을 통한 연구·관리가 필요함.

그런데 현재 소방공무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질병연구와 진료를 위해 경찰병원 등을 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이들 진료 기관의 경우 일반적인 진료시설과 의료진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어 특화된 소방공무원 관련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데에어려움이 있음. 치료부터 재활과 심신안정 및 연구 관리의 기능적 한계로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가 소방전문 의료기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한 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 연구를 통하여 체계적인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립소방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원장 1명과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6명, 감사 1명을 두도록 함(안 제2조 및 제6조).
- 나.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등의 진료,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특수건강진단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립소방병원은 자체 사업의 수익금과 출연금, 기부금 및 수입금으로 운영하며,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마. 국립소방병원은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6조).
- 바. 소방청장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등에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사.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업무를 지도·감독하고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법률 제 호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소방병원을 설립·운영하여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연구를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 국립소방병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3조(설립) ① 국립소방병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
 -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 5. 공고의 방법
- 제4조(정관) ① 국립소방병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 및 부속기관의 소재지

- 4. 사업에 관한 사항
-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 7. 기구와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9. 해산에 관한 사항
-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11. 인력 및 기술지원을 위한 협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 ② 국립소방병원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국립소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소방공무원의 진료와 소방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그 가족과 소방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와 의무소방 의 질병진료
- 2. 소방공무원의 특수근무환경에 따른 건강유해인자 분석 및 질병에 관한 조사·연구
- 3.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
- 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 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응급의료사업
- 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사업

- 7.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소 방전문치료센터와의 협력 및 지원
- 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119구급대원 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9. 소방공무원 및 지역주민의 보건교육 사업
- 10.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
- 11. 그 밖에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보건의료사업의 수행 및 관리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공무원 등의 진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 ① 국립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원장 1명
- 2. 상근이사 2명, 비상근이사 6명
- 3. 감사 1명
- ② 원장·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임명한다.
-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원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감사는 국립소방병원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 ⑦ 원장·이사 및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임명되는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국립소방병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제8조(겸직)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나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소속대학·연구기관·의료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소방병원의 연구 또는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겸하는 사람의 직무 및 보수와 그 밖에 겸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원장) ① 원장은 국립소방병원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않는다.
 -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 2. 회계부정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 ③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10조(직원 등의 임면) ① 국립소방병원에는 필요한 의료 요원과 직원을 둔다
 - ② 직원등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이사회) ① 국립소방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 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2. 조직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4.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 5. 인사·보수·복무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6. 기부금의 관리·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국립소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이나 정관에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된 사항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⑥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재원) 국립소방병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3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제13조(출연 또는 보조) ①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소방병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방병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제14조(국유재산 등의 무상 대부) ①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운 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사업연도) 국립소방병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① 국립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제출하여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국립소방병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17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소방병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 및 운영의 위탁) ① 소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 2. 다른 법률에 따라 의학·약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위하여 설립된 법인
 - ②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국립소방병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 소방청장

- 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수탁 기간은 위·수탁자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 ④ 국립소방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환자의 진료, 인사, 예산, 회계, 조직 등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9조(운영평가 및 지도·감독) ①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 다.
 - ②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공무원의 파견)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국립소방병원 에 파견할 수 있다.
- 제21조(「민법」의 준용) 국립소방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22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소방병원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 제2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국립소방병원이 아니면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소방병원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5조(벌칙) 제2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제26조(과태료)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국립소방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 장이 부과·징수 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 제3조 및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설립 준비) ① 소방청장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립소방병원설 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설립위원회는 소방청장이 위촉하는 7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방청차장이 된다.
 - ③ 설립위원회는 국립소방병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설립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⑤ 설립위원회는 국립소방병원의 원장이 임명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⑥ 설립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경우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며, 설립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 제3조(설립 비용) 국가는 국립소방병원을 설립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 제4조(권리·의무의 승계)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소방병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에 속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 제5조(설립 당시의 예산)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국립소방병원은 설립 당시 국립소방병원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소방 청 소관 예산을 종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되는 경비는 국립소방병원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 제6조(설립 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명) ① 국립소방병원의 설립당시의 원장과 이사 및 감사는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 청장이 임명한다.
- 제7조(예산 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국립소방병원 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국립소방병원 예산서는 설립위원회가 작성할 수있다.